

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지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9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5월 26일

발 의 자: 김지향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원중,
김재진, 김태수, 남궁역,
남창진, 송경택, 유만희,
윤종복, 이상욱, 이성배,
이원형, 이종태, 임춘대,
최민규, 허 훈, 황철규
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통해 그 공헌에 대한 예우를 받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로를 함께 함께한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는 부족한 실정임.
- 이에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배려가 체감될 수 있도록,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대상자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 적용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로를 함께한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대상자를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함(안 제5조제2항제4호).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 중 “따른 국가유공자”를 “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원내용 및 지원대상) ① (생 략)	제5조(지원내용 및 지원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.	②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」에 <u>따른 국 가유공자</u>	4. ----- ----- <u>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</u>
5. · 6. (생 략)	5. · 6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(지원내용 및 지원대상) 제2항제4호를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